

1988년	02월	01일	개정
1991년	04월	01일	개정
1995년	07월	31일	개정
1999년	06월	16일	개정
2002년	01월	26일	개정
2004년	02월	21일	개정
2005년	02월	28일	개정
2009년	01월	28일	개정
2009년	10월	0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일괄 개정
2013년	05월	16일	일괄 개정
2013년	07월	16일	일괄 개정

사단법인 한국예총 대구광역시연합회 조직 및 운영규정



사) 한국예총대구광역시연합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대구광역시연합회(약칭:대구예총)라 칭한다.

제 2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대구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여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①본회는 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
2. 각종강습, 학술세미나 개최 및 출판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옹호하는 사업
4. 국내외 문화교류에 관한 사업
5. 한국예총 본부와의 유대강화 및 회원단체간의 친목에 관한 사업
6. 예술문화상의 제정 시행에 관한 사업
7.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에 관한 사업
8.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②전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단 체

제 5 조 (구 성)

- ①본 연합회는 당해 시내에 설립된 한국예총 회원단체의 연합회(지회)와 구지회를 회원으로 구성하여 설립한다.
- ②본 연합회의 구 지회는 연합회장이 자율적으로 설립하되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③한국예총의 회원단체에서 인준한 신설지부는 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 6 조 (회원단체의 권리)

본 회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 7 조 (회원단체의 의무)

본 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본 회의와 관련된 사업시행 등에 관한 보고
4. 기타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 8 조 (징 계)

①연합회장은 연합회의 회원단체 또는 임원중에서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1. 본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연합회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4. 한국예총의 설립목적에 반하는 단체에 가입 하였을 때

②전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제 9 조 (재심청구)

- ① 제8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단체 및 임원은 징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재심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재심하여야 한다.
- ② 재심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 (특별회원)

- ① 본 연합회에는 공익단체나 개인 등을 연합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연합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 및 월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입회비 : 단체 100만원 이상, 개인 10만원 이상
 2. 월회비 : 개인 1만원 이상
- ② 특별회원은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사항을 배제한다.

제 3 장 임 원

제 11 조 (임 원)

본 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이 사 약간 명(회장, 부회장 포함)
4. 감 사 2인

제 12 조 (선 출)

- ① 연합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연합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단체의 정회원으로서 소속 회원단체장의 후보추천을 받거나 대의원 1/5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현

회장이 중임하기 위하여 출마 할 경우 소속 회원단체장의 추천과 관계없이 선출할 수 있다.)

2. 연합회장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연합회장은 회원단체 지회장, 한국예총 시·군·구지회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 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사항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4. 수석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회장이 선임하며, 회장 궐위 시 회장직을 대행하며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각각 부회장을 맡지 아니한 회원단체 중에서 선출한다.

6. 이사는 회장, 부회장 및 각 회원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회원단체 당 2인 이내로

하며, 회원단체별 동수로 한다.

②당연직 이사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 선임될 때에는 신임회원 단체장, 신임 지역연합회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연합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선임을 청구 할 수 있다.

③ 회의 임원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 (임 기)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②감사와 수석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직 무)

①연합회장은 본 연합회를 대표하며 본 연합회의 직무를 통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연합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 연합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고문, 자문위원 및 위원회)

본 회에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본 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단,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 조 (구 성)

①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각 회원단체에서 10인 이내로 추천한 총원 100인 이내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대의원의 자격은 추천 당시 회원단체 정회원이어야 한다.

제 17 조 (소 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연합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1회, 2월까지 개최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연합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제14조(직무) ④항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18 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정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 19 조 (정족수)

- ①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②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대의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원 충족에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 수로 한다.

제 20 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회의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3분의 2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4조(임무) ④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제1항 제1호, 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제 ③항에 의한 총회는 수석부회장이 의장이 되며 수석부회장 궐위 시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2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와 사무처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23 조 (소 집)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4 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심의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신규 가입신청 회원단체에 관한 심의
5.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6. 사무처장의 인준동의
7. 제4조 6호에 의한 예술문화상의 심의
8.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25 조 (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원 총족을 대신 할

수 있으나, 의결 정족수는 위임장을 제외한 실제 출석원 수로 한다.

제 26 조 (서면결의)

본 회의 사업과 운영 등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이사회의 소

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서면결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회와 관련된 사항
3. 판결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나 예총 상급단위에서 징계중인 자

제 6 장 재 정

제 28 조 (세입 등)

본 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총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 29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한국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감 사)

①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②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한국예총의 감사를 받는다.

제 7 장 사 무 처

제 31 조 (사무처)

-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②사무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2 조 (사무처장 등)

- ①본 회의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 ②사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신임 사무처장은 한국예총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사무처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④한국예총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처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 ⑤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⑥사무처 직원은 처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 33 조 (보 수)

본 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처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 8 장 보 칙

제 34 조 (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 ①본 연합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 ②전항의 규정 변경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규정 변경사유서
 - 2. 개정될 규정
 - 3. 신·구조문 대비표
 -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③ ‘조직 및 운영규정’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규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 35 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연합회는 정기총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연합회 현황(각 회원단체 회원명부 포함) 및 새해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 정관 및 예총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7 조 (위임내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1.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 칙

①본 규정은 한국예총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본 규정은 시행과 함께 특별시, 광역시, 도지회(지회)는 이 규정에 따라 연합회 명칭변경 등 지역연합회(지회)의 이사회 의결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2014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3년 2차 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3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